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홍보사업 대상 확대〉
■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52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동아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2. 6.
3. 회 부 일 : 2025. 2.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전력사업 및 에너지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의 보급·확산을 통해 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보 전달 및 홍보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재단은 그 설립 목적과 달리 최근 들어 에너지 전반을 균형감 있게 다루지 않고 원자력에 편중된 홍보사업에 집중하고 있음. 이뿐만 아니라 재단이 수행하는 에너지 국민 인식 조사의 경우 에너지에 대한 국민 인식도 파악과 에너지 정책 기초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조사 항목 대부분이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음.

한편, 재단 홍보사업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 제11조는 재단을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단의 설립 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개정이 필요함.

이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원자력에 치우친 홍보사업이 아닌 전력사업과 에너지 전반에 대한 정보 전달 및 홍보에 나서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호).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즉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홍보 대상을 기존 ‘원자력’에서 ‘발전원과 전력사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3. 발전원(發電源)과 전력사업(電力事業)----- ----- ----- -----

현행법 제10조는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등으로 구분하고,¹⁾ 제11조에서 그 시행자

1)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

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사업별 시행주체는 다음과 같음.

<발전소주변지역법 지원사업별 시행자 >

사업종류		사업시행자	관련근거
기본 지원 사업	소득증대사업	지자체장	시행령 제19조제4항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발전사	시행령 제19조제5항
	육영사업		시행령 제19조제6항
특별지원사업		지자체장	시행령 제22조제4항
기타지원사업		지자체장	시행령 제25조제2항
홍보사업		전담법인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법 제11조제3호

이 중, 홍보사업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하 “재단”)이 수행하고 있는데, 법 제10조는 홍보사업을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에서는 시행주체를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홍보사업의 범위와 시행자의 설립 목적 간에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홍보사업을 시행하는 재단은 2017년 기존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서 명칭을 변경하고, 정관도 개정²⁾하여 원자력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석탄, LNG 등 다양한 발전원을 포함한 전력·에너지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국민 인식 제고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은 여전히 재단의 목적을 ‘원자력에 관한 홍보’로 한정하고 있어, 원자력 이외의 에너지를 대상으로 한 사업 추진 시 법령 해석에 따른 제약 또는 행정상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정부의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따라, 에너지믹스의 다변화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 대한 홍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법률 정비가 필요함.

이에 개정안은 재단이 전력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홍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상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상 조문 간 정합성 문제를 해소하고 특정 발전원에 국한되지 않은 균형 잡힌 에너지 정보 제공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재단 정관상 설립 목적(제2조)에 ‘전력사업 및 에너지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의 보급 확산’

2)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정관」

제2조(목적) 본 재단은 원자력, 신재생, 석탄, LNG 등 전력사업 및 에너지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의 보급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에너지문화를 진흥시킴으로써 사회의 공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의 “발전원과 전력사업”이라는 표현을
“전력사업과 에너지 전반”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461